

##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1998년 9월 23일 제출
- 나. 발 의 자 : 오광교 의원외 3인
- 다. 회부일자 : 1998년 9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98년 10월 2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광교 의원)

#### 가.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7조 제4항 중 “의정계장으로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로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의회업무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기관, 외국인 포함)에게 포상하도록 하고 있고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포상의 종류와 방법, 시기,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논의가 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요원에 관한 것임.
-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무요원이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 등을 처리한 자라 할 수 있으며 현행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 제7조 제4항에서는 의정계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서구의회 제79회 임시회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기능의 유사·중복기구와 일반관리업무 및 지원부서 등을 통·폐합하여, 부서내에서의 결재과정을 축소하고 자리중심에서 일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제제도를 폐지하고 과 중심체제(大課主義)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음.
-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